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691
----------	------

2017년 4월 27일
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7. 3. 16. 조규영 의원(찬성자 9명)
- 나. 회부일자 : 2017. 3. 20.
- 다. 상정일자 :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
- 2017년 4월 27일 상정·의결(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집행부의 법령이나 조례상 의회 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방법 및 시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처리에 혼선이 있는바, 이에 대한 명확한 보고 방법 및 시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회,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시기와 가까운 회기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의 건으로 보고하도록 함(안 제55조의3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- 다.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개정안은 법령과 조례상에서 서울시장과 교육감(이하 “시장 등”)이 의회·본회의·상임위원회(이하 “의회 등”)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,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‘보고의 건’으로 보고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, 의회 등에 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도모하고자 제안됐음.

2 의회 등 보고 시 그 시기와 가까운 회기에 ‘보고의 건’으로 보고 (안 제55조의3 신설)

- 시장 등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·결산서, 예산전용, 감사실적결과, 재위탁·계약, 기관 정관 변경사항 등 모두 105건의 집행기관 업무 수행 과정과 결과를 의회 등에 보고해오고 있음.

<표-1>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부의 의회 등 보고 사항
(2017.4월 기준)

단위: 건

구분		본청	교육청
보고 대상	의회	39	17
	본회의	1	1
	상임위원회	45	2
계		85	20

- 이 때 관련 조문에서는 보고 시기, 보고 대상, 보고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, 구체적인 보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하지 않아 절차상의 혼선이 발생하고 업무 처리에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음.
 - 즉, 보고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사안의 경중(輕重)에 따라 ‘전문위원 실 공문 제출’과 ‘의원 개인 전자우편 발송’으로 대체함으로써 시장 등의 보고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음.
- 현재 상임위원회 대부분은 자체적인 판단 하에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거

나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받고 있어 의회 전체적으로 통일된 보고 처리절차가 필요한 상황임.

<표-2>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보고 방식(2017.4월 기준)

상임위원회	집행부 보고 방식	상임위원회	집행부 보고 방식
운영	해당 사항 없음	보건복지	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
행정자치	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	도시안전건설	위원회 회의 시 업무보고 형식으로 보고
기획경제	위원회 회의 시 업무보고에서 함께 보고	도시계획관리	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(의견청취안으로 처리)
환경수자원	위원회 회의 시 업무보고에서 함께 보고	교통	위원회 회의에서 보고 (비회기 : 필요한 경우 폐회중 회의 개최 후 보고)
문화체육관광	위원회 회의 시 업무보고 형식으로 보고 (간담회 등의 비공식 회의에서도 보고)	교육	위원회 회의 현안업무보고에서 함께 보고

- 이에 본 개정안은 의회 등 보고 사항을 그 시기와 가까운 회기에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·처리토록 함으로써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, 보고 내용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점검과 견제가 가능하게 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.
- 다만, 보고시기가 비회기이거나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다음 회기가 열릴 때까지 처리할 수 없어 시의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
현행	개정안	수정 의견
<신설>	제55조의3(조례상 보고 등) 시장 및 교육감은 <u>다른 법령 및</u>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.	제55조의3(조례상 보고 등) 시장 및 교육감은 <u>법령 또는</u>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. <u>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</u>

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법령이나 조례상에서 시장 등이 의회 등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그 시기와 가까운 회기에 ‘보고의 건’으로 상정해 보고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, 보고 절차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취지와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또한 이미 각 상임위원회 대부분이 위원회 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받고 있으므로, 업무의 연속성 보장 측면에서도 근거 규정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다만, 보고시기가 비회기이거나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다음 회기가 열릴 때까지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의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는 등의 보완·검토가 필요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6. 토 론 요 지 : 없음.

7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, 보고시기가 비회기이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 그 보고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하도록 함(안 제55조의3).

8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
(재적위원 13명,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).

9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음.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관련
번호	1691

제안년월일 : 2017년 4월 27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, 보고시기가 비회기이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 그 보고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하도록 함(안 제55조의3)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기 타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5조의3 중 “다른 법령 및”을 “법령 또는”으로 하고,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일부개정안	수정안
제55조의3(조례상 보고 등) 시장 및 교육감은 <u>다른 법령 및</u>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제55조의3(조례상 보고 등) 시장 및 교육감은 <u>법령 또는</u>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. <u>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</u>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5조의3(조례상 보고 등) 시장 및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55조의3(조례상 보고 등) 시장 및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